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4.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호텔롯데 등 5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결0322)	평촌개발(주)는 1999. 12. 2. 해태음료(주)를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계약, (주)호텔롯데, 롯데산업(주), 광인쇄(주)는 2000. 1. 21. 평촌개발(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1999. 12. 11. 공정위에 신고한 바, 동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가 아님에도 1위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가 2위 업체인 해태음료(주)를 인수하는 결과가 되어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도 미흡한 과실음료시장에 있어서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83.8%의 시장점유율을 확보로 일방적인 가격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 위반	◎ 롯데칠성음료(주)와 평촌개발(주)는 시정명령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 과실음료의 공장도 가격을 인상시에는 별도 산식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장도 가격의 변동이 있을 시 가격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며,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페트병과 캔의 구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태음료(주)의 기존 거래업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주)호텔롯데, 롯데산업(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평촌개발(주)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9%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함

2000. 4. 2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1999. 4. 27. 이사장 명의로 구성사업자 중 서울지방조달청이 실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경인포장(주), (주)공영사, (주)삼덕, 삼덕산업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2000단체0374)	(주), 삼덕아스콘(주), 선화산업(주), 아주파이프공업(주), 원우아스콘(주), 제일산업개발(주) 등 9개 아스콘 제조업체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당시의 가격 대비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아스콘을 판매하지 말 것을 촉구, 민수아스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서울·경인지역의 아스콘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아스콘 제조 8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375)	경인포장(주), (주)삼덕, 삼덕산업(주), 선화산업(주), 원우아스콘(주), 원우종합건설(주), 유진종합개발(주), 제일산업개발(주)의 서울·경인지역 대표자는 1996. 7. 1. 모임을 갖고 이미 계약한 단가는 조달가격 이상으로 할 것 과 1996. 7. 8.자 계약분부터 민수아스콘 가격을 관수 아스콘 가격보다 톤당 2,000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 및 서울특별시의 발주물량 등 야간작업 단가를 별도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림산업(주) 및 삼덕산업(주)에 대해 민수아스콘 물량을 오산 I·C 이남 지역권에만 판매토록 합의하였고, 타 시·도지역 업체의 서울·경인지역 시장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7. 2 모임에서는 7. 8. 이후의 영업은 견적 및 기타 모든 활동을 자신들의 실무부서장 협의회에서 주관하기로 합의하는 등 서울·경인지역 아스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즉시 해당 합의사항을 파기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연명으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4. 29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길맥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소기0243)	주식회사 길맥은 1999. 8. 17. 신문을 통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삼푸 「보노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임상 실험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설문조사결과만 있을 뿐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간단한 삼푸만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예방”, “비듬과 가려움증까지도 해결”이라고 표시하였으며, 또 동 제품을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Tox Monitor Laboratories, Inc에서 미국 FDA와는 직접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적인 관련이 없는 미국 CPSC가 정한 위해물질의 독성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해 검사를 수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FDA 화장품 안정성, 무독성 검사 합격", "미국 FDA 안전기준 무독성 검사에 합격..."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2000. 5. 8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북부산종합유선방송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000부사0081)	<p>부산광역시 소재의 북부산종합유선방송은 1999. 12월 중순경부터 2000. 1월말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오전 및 오후 방송 준비시간대에 약 30초에서 60초간의 자막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001. 3. 13.부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산종합유선방송은 2000년도 안으로 케이블TV방송국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라고 방송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였으며,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북부산유선이 케이블방송으로 전환하면 낙동방송이 불리한 입지에 처하게 되는 관계로 가입자택으로 몇번씩 전화하여 가입을 중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방송하여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방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위반</p> <p>또한, 북부산종합유선방송은 1999. 12월 중순경부터 2000. 1월말까지 일반적인 신규가입자에게는 무료시청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입자로 되었다가 다시 자신의 가입자로 전환한 고객 3명에 대해서는 6개월간, 10여명에 대해서는 2개월간 월 시청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중계유선방송을 통하여 3회(매 1일 1회)에 걸쳐 각 1분간 자막방송하여 공표토록 함</p>

2000. 5. 9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배합사료 8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구속조 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전사0294)	(주)우성사료, 제일사료(주), 현대사료(주), (주)도드람 사료, (주)에그리브랜드푸리나코리아, 대상사료(주), (주)두산, 고려산업(주)는,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 대방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및 직거래처와 체결한 거래약정서상에 판매지역 및 타사제품 취급금지, 소유권 유보, 일방적 계약해지, 일방적 조문해석, 관할법원의 일방적 지정 등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계약조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 설정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 조제1항제5호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의 거래약 정서상 해당 계약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
비알코리아(주)의 구속조 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0070)	비알코리아 주식회사는 가맹계약자는 독자적으로 고객확 보경쟁과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맹계약자와 체결한 베스킨리빙스가맹계약서 제26조제 3호 및 제4호와 던킨도너츠가맹계약서 제26조제3호 및 제4호에 가맹계약자는 가맹점 소재지역 내에서만 국지적 으로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가맹 계약자는 사전에 그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자신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자신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만약 가맹계약자가 이를 위반할 경 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 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 조제1항제5호 위반	◎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 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해당 가맹계약서의 규 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 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 은 사실을 모든 가맹계약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0. 5. 9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광주지역 4개 농산물도매 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12광사1838)	광주청과부류판매(주), 광주중앙청과(주), 광주원에농업 협동조합, (주)호남농산물은 1998. 5. 6. 농림부 및 1998. 8. 8. 광주광역시시의 위탁상장수수료 인하 지시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형편에 처하자, 상품의 거래 조건은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1998. 8. 15.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동 관리사무소장 입회하에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의 지급요율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8. 17.부 터 시행하여 광주광역시 지역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경 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 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광주광역시 지역 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 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19조제1항제2호 위반	

2000. 5. 16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결0129)	에스케이텔레콤(주)는 포항제철(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신세기통신이 회생불가한 회사가 아니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성을 상회할 정도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 21. (주)신세기통신 주식 51.19%를 취득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그 대가로 포항제철(주)에게 현금 1조 874억원을 지급한 후, 12. 23.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1위 업체가 3위 업체를 인수하는 동 기업결합으로 신규진입이나 해외경쟁 도입이 어려운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체제가 5사 체제에서 4사 체제로 감소되어 시장 집중도가 심화되며,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타사에 비해 경쟁상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단말기 시장에 있어서도 자회사인 SK텔레텍(주)의 제품에 대한 수요독점의 우려가 있어 동 기업결합행위는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 위반	◎ 자신의 이동전화시장 가입자기준 시장점유율과 (주)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01. 6. 30.까지 50% 미만이 되도록 하고, 2001. 6. 30. 이전에 50% 미만이 된 경우에도 2001. 6. 30.까지 50% 미만으로 유지토록 하며, 에스케이텔레텍(주)를 통해 자신과 (주)신세기통신이 공급받는 셀룰러단말기가 2000. 1. 1.부터 2005. 12. 31.까지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행결과와 그 증빙자료를 당해 연도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토록 함

2000. 5. 22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영우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079)	영우회는 1999. 12. 14 개최한 총회에서 제정한 영우회 시행세칙에 따라 일반피아노(UP) 28종에 대해 최저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가격표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면서 현금판매의 경우 모델별 최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00,000원 내지 150,000원을 할인한 가격범위 내에서 판매하도록 할인폭을 결정·시행하였으며, 동 총회에서 정한 가격을 구성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9. 12. 14. 개최된 총회에서 결정한 제값 받기 운동을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우회 시행세칙'을 파기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며, 동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가격파괴시는 어떠한 벌칙과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은 물론 항의나 제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 회원들의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0. 1월말경부터 2. 2.까지 외부인을 고용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자신이 정한 가격을 지키지 않은 강서구 가양대리점을 적발하여 200,000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서울특별시 및 한강 이북의 경기도 지역 영창피아노 대리점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5. 2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대한항공의 구속조건 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0018)	주식회사 대한항공은 자신의 스카이패스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제휴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주)와의 병행제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나항공(주)의 아시아나보너스카드(이하 'ABC카드'라 함)와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삼성카드(주)와 아시아나항공(주)와의 제휴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1998. 3. 31. 업무제휴하였고, 1998. 5. 19. 및 1999. 11. 20.에 자신과 제휴관계에 있는 국민신용카드(주) 및 SK(주)가 아시아나항공(주)와 ABC카드 제휴계약을 체결하자 상호간의 영업전략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각각 제휴관계를 중단하였으며, 외환신용카드(주)가 아시아나항공(주)와 ABC카드 제휴계약을 추진하자 외환카드사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주)와 업무제휴를 함으로써 상호간의 영업전략이 상이하게 변경될 경우 부득이 제휴관계를 중단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여 이를 무산시키는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p>◎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250백만원</p>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서울중앙병원(장례식장)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019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서울중앙병원은 자신의 부속시설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 장례관습상 음식물 반입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에 의한 사고 및 화재예방 등을 이유로 외부음식물의 장례식장 내 반입을 제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및 매점의 이용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거래강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